

**제조 · 수입 · 판매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요약서**

본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참고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1

한 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 4

2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해설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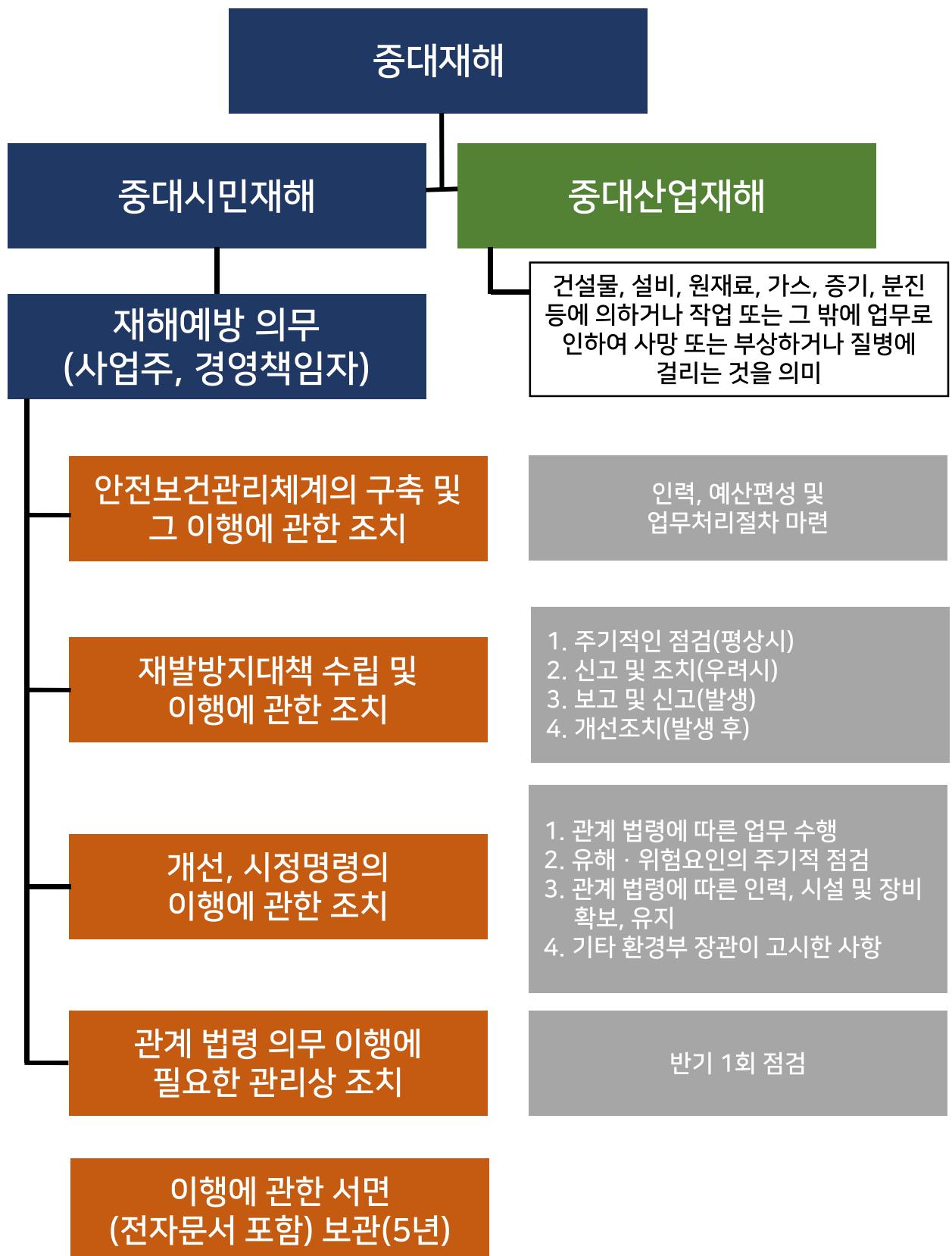
3

제조물의 범위와 제조물책임법 비교 ..... 8

4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리체계 구축 ..... 12

# 한 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해설

## 중대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 ✓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1호)
- ✓ 이 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결과 중 하나를 야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 ✓ 50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2022. 1. 27. 부터)
- ✓ 개인사업자 또는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2024. 1. 27.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 ✓ 사업주

1.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8호)

###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1.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고하 책임이 있는 사람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

##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은?

### ✓ 종사자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1. 근로자
2.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

##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은?

안전 · 보건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됩니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

## 양벌규정 및 손해배상

### ✓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처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50억원 이하 벌금
2. 기타 중대시민재해 :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11조)

### ✓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시민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등은 중대시민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 제조물의 범위와 제조물책임 비교

## 원료 · 제조물의 의미?

### ✓ 원료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의 의미로 사용되며, 제조에 투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제조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6호,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1호)

## 원료 · 제조물의 범위는?

### ✓ 모든 원료 · 제조물

해당 범위를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원료 · 제조물을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체유해성이 없으나 관리상의 결함이 있거나 결과적으로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인체유해성이 있을 경우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원료 · 제조물의 생산 · 제조 · 판매 · 유통하는 기업에 적용되므로, 사업자의 모든 영업과정이 포함됩니다.

※ 다만, 이용자의 부주의로 난 사고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조물책임법」과 다른 점은?

구분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li> <li>재산적 손해, 생명신체 관련 손해 등 모두 포함</li> <li>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서도 특정 제조물 결함에 관하여는 책임 인정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물의 결함 관련 생명신체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재해발생 관련 형사책임 + 민사책임</li> <li>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지배, 운영, 관리에서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관련 형사책임 + 민사책임</li> </ul>
제조물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물의 개념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li> <li>부품이나 원재료 제조자도 책임 부담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물책임법과 동일</li> <li>부품이나 원료 제조자도 책임 부담 가능</li> </ul>
책임의 주체	제조업자 (유통, 판매업자는 보충적인 책임)	생산, 제조, 판매, 유통업자 모두 책임 주체 가능
민사책임	대체적으로 무과실책임적 성격	민사책임의 경우 기본적으로 과실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이하	5배 이하
인과관계	결함존재 및 인과관계 필요 (추정 관련 규정 있음)	결함존재 및 인과관계 필요 (명시적 추정 관련 규정 없음)
형사처벌	업무상과실치사상 일반론으로 가능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 존재

자료출처 : 법무법인 율촌(중대시민재해 관련 법적 리스크 및 대비방안)

## 사례 확인(제조업)

### 유형, 사례

1. 화학물질 관련 제품 문제(가습기살균제 등)
2. 자동차 결함(급발진, 배터리 화재 등)
3. 가전제품 결함(에어컨, 냉장고 화재, 휴대폰 배터리 폭발 등)

### 주요 이슈

1. 원료, 원재료, 부품 제조업자의 책임  
→ 원료, 원재료, 부품의 안전성, 성능기준 충족 등
2. 완성품 제조업자의 책임  
→ 원료조달 단계, 설계 · 기획 단계, 제조공정 단계
3. 당해 산업 관련 각종 규제 법령 준수와의 관계  
→ 별도로 적용
4. 책임 주체 및 상호간 책임 사이의 관계  
→ 원료 · 부품의 결함 / 설계 · 제조 과정의 결함
5. 판매 유통업자의 책임

자료출처 : 법무법인 율촌(중대시민재해 관련 법적 리스크 및 대비방안)

## 사례 확인(판매 · 유통업체)

### 유형, 사례

1. 판매하는 물품의 결함 문제
2. 대규모 점포의 시설 관리 문제
3. 배달종사자 업무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 문제

### 주요 이슈

1. 판매, 유통만 하는 업체의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2. 원료공급자, 제조자, 판매유통자 책임의 관계 문제
3. 대규모 점포의 임대인, 임차인, 건물관리업체 책임 및 관계
4. 임대매장 관련 책임 관계, 온라인 판매자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책임 관계
5. 배달종사자의 지위, 관련 책임의 주체

자료출처 : 법무법인 율촌(중대시민재해 관련 법적 리스크 및 대비방안)

#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 · 이행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 · 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포함한 **안전 · 보건 관리 인력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하며, 해당 인력의 확보 ·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 장비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26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은 아래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생산 · 제조 · 판매 · 유통 중인 원료 · 제조물에 적용될 것
2.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과 관련된 것
3. 위의 유해 · 위험 요인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2.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점검 및 사후조치, 교육실시 점검 및 사후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점검의무 : 경영책임자는 사업상 취급하는 원료 · 제조물의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령상 의무의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2. 교육실시 점검의무 : 경영책임자는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실시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3.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경영책임자등은 재해발생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계획서 구성 표준(안)

내용	상세 내용
사고개요	사고유형, 현황, 현장정보, 사고정보, 피해상황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활동 상황 문서점검, 현장조사 내용
사고원인 분석 및 결론	시험실시, 기타자문 등을 통한 원인분석 결과
재발방지 대책	자체 방지대책, 명령에 따른 이행조치 계획 및 결과 보고
향후조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계획 등

#### 4.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경영책임자등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사항 이행조치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구성 표준(안)

내용	상세 내용
개선,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는가?	
명령사항 확인	개선,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 후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했는가?
	개선,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 후 해당 내용을 관련 담당자 등과 공유했는가?
이행조치계획서 마련	이행조치를 위한 계획서를 마련했는가?
이행조치실시	이행계획에 따라 이행조치를 실시하였는가?
	이행조치 후 그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였는가?
이행조치결과 정리 및 보고	이행조치 후 그 결과를 문서로 정리한 것을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하였는가?

## 구축하는 방법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 경영자 리더십

-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 설정
- 안전보건에 대한 필요한 자원(인력, 시설, 장비) 배정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 독려



#### 근로자의 참여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 수집 및 정리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조사
- 위험기계 · 기구 · 설비 등 파악
- 유해인자 파악
-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 제거 · 대체 및 통제

-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
- 위험요인별 제거 · 대체 및 통제방안 검토
-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이행
- 교육훈련 실시



#### 비상조치계획 수립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작성
-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 수립
-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



#### 도급 · 용역 ·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 선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시



####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
-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 구축방법

- ✓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합니다.**
- ✓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합니다.**
- ✓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 방법

- ✓ '안전보건'을 경영방침으로 핵심가치로 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알립니다.
- ✓ 작업환경을 최대한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정돈합니다.
- ✓ 주요 작업장, 휴게시설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위험한 기계·설비,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부착합니다.
- ✓ 작업 전 안전미팅, 안전제안 활동, 아차사고 신고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절차를 도입합니다.
- ✓ 모든 구성원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하며, 논의결과를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사고사례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 ✓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인 직원을 포상합니다.
- ✓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민재해를 가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 발생 시 보고 신고와 조치는?

-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담당자는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상황을 보고하며,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발생상황을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관리 담당자의 대응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필요시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지시하며, 상황 종료 후 피해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담당자는 경영책임자 등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경영책임자 등과 관계 행정 기관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고사항

1.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2.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사고 피해현황  
(피해확산 현황, 현장 응급조치 현황, 대피현황 등)
3.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